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96
----------	-------

발의연월일 : 2026. 6. 11.

발 의 자 : 이종욱·서천호·이성권  
배준영·윤한홍·박성민  
엄태영·김희정·조승환  
송언석·김정재·박상웅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테마파크시설에 취업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테마파크시설은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허용될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을 하는 영업장을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7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테마파크업을 하는 사업장

제57조제3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제56조제1항제27호의 테마파크업을 하는 사업장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56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할 때까지는 제56조제1항제2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56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아

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종료할 때  
까지는 제56조제1항제2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6. (생략)

<신설>

② ~ ⑨ (생략)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 ② (생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1. ~ 26. (현행과 같음)

27.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6호의 테마파크업을 하는  
사업장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1. ~ 17. (생략)

<신설>

④ ~ ⑥ (생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제56조제1항제27호의 테마

파크업을 하는 사업장

④ ~ ⑥ (현행과 같음)